

## 지방토론회(대구편)

### 언론자유와 언론윤리

한병구

경희대 신문방송대학원장 · 중재위원

언론자유와 문제와 관련해서 세계언론사를 되돌아 볼 때 대체로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한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즉, ① 언론에 대한 탄압 → ② 언론자유쟁취를 위한 투쟁 → ③ 언론자유 획득 → ④ 언론의 춘추전국현상 → ⑤ 치열한 경쟁 → ⑥ 언론자유와 방종과 남용현상 → ⑦ 사회질서 혼란에서 다시 언론에 대한 탄압으로 반복되는 과정이 그것이다. 이 과정 중에서 특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과정은 언론자유를 획득한 후에 뒤따르기 마련인 언론의 춘추전국현상을 맞이했을 때이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두 차례에 걸쳐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실패했고 그리고 현재 또 한번의 과정을 경험 중에 있다. 과거 두 번에 걸친 실패의 주된 원인은 언론의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의 결핍에서 비롯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과거 두 번의 언론자유화시대를 맞으면서 두 번 다 윤리관에 입각한 자율적 규제에 실패했고, 결국 타율적 통제를 자초하는 우를 체험했다.

지금 세번째의 기회를 맞이했다. 「언론자유무정부상태」 혹은 「언론의 춘추전국시대」로 비유되기도 하는 오늘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과거의 비극적 경험이 되풀이 되지 않는 진정한 민주언론의 기틀을 잡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언론윤리확립의 제고가 관건이 된다. 언론의 윤리문제가 세계에서 최초로 대두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캔자스」 주 신문편집인협회가 1910년에 윤리강령을 제정한데 이어 1921년엔 「미조리」, 「텍사스」, 「플로리다」 주 등 주협회에서도 윤리강령을 만들었다. 그리고 1923년에 전미국신문편집인협회가 윤리강령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괴리가 있기 마련이다 즉 신문윤리강령이나 그 실천요강이 추구하는 이상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언론인 스스로가 이 강령이나 실천요강을 얼마나 준수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런 점에서 윤리 강령 채택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아래 이 강령규정을 위반한 언론사에 대해 어떤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생겼고, 이에 따라 1961년 9월 12일에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동위원회는 1980년부터 1988년 4월말 현재까지 근 9년 동안에 걸쳐 총 933건을 심의해서 해당 언론사에 대해 주의, 비공개경고, 공개경고 등을 결정했다. 그러나 동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별로 없다는 데서 그 실효성을 기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언론의 윤리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점이 고려될 직하다. 첫째, 언론사마다 제각기 나름대로의 윤리강령이나 그 실천요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한겨레신문」과 KBS가 이미 제정을 끝냈고, 그리고 MBC도 「문화방송위상연구위원회」를 발족시켜 현재 방송강령을 마련 중에 있다. 둘째, 언론인 스스로의 자정노력도 필수적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일부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자정운동이 점차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셋째, 정정보도난의 설치도 언론의 윤리성

제고에 큰 몫을 하리라고 본다 최근에 미국의 많은 신문에서는 한 주에 세번 내지 5 번의 정정보도를 통해 게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좋은 신문일수록 더 많은 정정보도를 하고 있다. 넷째, 신문옴부즈만제도와 같은 자율심의기구의 설치도 고려해 볼만하다. 이 제도는 1969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스웨덴의 신문평의회 산하에 설치한 데서 비롯된다. 이후 덴마크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Washington Post 지와 같은 몇몇 유수한 신문사에서 개별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신문옴부즈만이 하는 일은 독자의 불만을 접수해서 불만의 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언론사에 대해 자발적인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든지 아니면 불만을 호소한 사람의 반론을 게재토록 요구하는 것이다. 보도에 의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인 언론중재제도는 그 나라의 특수성에 따라 여러 형태로 운영된다. 예컨대 스웨덴의 옴부즈만제도가나 터키의 「신문명예재판소」 제도가 불만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영국에서처럼 신문평의회가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경우, 혹은 미국에서처럼 언론사내에 자체 옴부즈만을 두고 그 업무를 전담케 하는 등의 경우가 그것이다. 선진국의 예를 감안해 볼 때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제도도 이러한 맥락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다만 그 특성상 차이가 있다면 상기 제도들은 자율규제기구에 의해 운영되어지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중재위원회제도는 순수한 자율규제기구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중재위원회의 설치에 모든 윤리기구들이 그러하듯이 신문윤리기구의 자율적 규제만으로는 미흡하다는 인식하에 취해진 것이다. 따라서 중재위원회의 존치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중재위원회가 생긴 1980년대 초반 하더라도 항간에서는 이 기구가 언론규제를 위한 악법이라는 비난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오늘날에 일반인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언론인들까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징후를 보이고 있음은 중재제도의 전망을 밝게 해 주고 있다. 1987년 10월에 현직 언론인 1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언론중재제도의 존재당위성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필요한지를 묻는 질문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의 28.3%, 「대체로 필요하다」가 32.7% 등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응답자가 과반수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제 언론중재위원회가 탄생한 지도 근 10년이 가까워 지고있다. 그 동안 중재위원회는 총 580건의 중재신청을 접수·처리했다. 1988년까지는 중재신청이 많은 편이 아니었으나 1989년엔 접수건수가 배 이상으로 늘어났고, 1990년에도 4월말 현재 30건으로, 그 추세로 보아 금년에도 1백 건이 훨씬 넘을 것이 예상되며 또 앞으로도 그러한 추세가 계속되리라고 전망된다. 그 이유로서 ① 계속적인 신생 정기간행물의 출현이 예상되고, ② 잘 훈련된 자질의 기자수가 매체팽창에 뒤따르지 못함으로써 야기되는 기사작성의 미숙, ③ 홍보강화로 언론중재위원회의 존재가 일반 국민들에게 많이 익숙하여져 있고, 그리고 ④ 국민의 권리의식수준이 현저하게 높아졌다는 점 등이 지적될 수 있다.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올해 제 34회 신문주간의 표어로 「책임있는 신문, 신뢰받는 신문」을 설정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그 당시의 구호를 보면 그 시대의 상황을 어렵פות이나마 짐작할 수 있듯이 올해의 표어는 오늘날 우리나라 신문의 무책임하고 방종에 흐르고 있는 언론상황을 잘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결국 「책임있는 신문」, 「신뢰받는 신문」의 구현은 언론인의 윤리관 확립이 선결조건이 된다. 언론인 스스로가 양심적인 윤리의식을 갖고 국민을 선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가짐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언론의 자유도 신장되는 것이다. 윤리의식이 저하된 언론은 역시 가치가 없고 무책임한 언론으로 전락하기 마련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깊이 되새겨 볼 때라고 본다. 엄격히 말해서 언론중재제도의 역할수행도 측면적으로 언론인의 윤리의식의 제고를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미국 미조리대 신문방송대학원, 경희대학교 대학원신문방송학과 (정치학 박사)

□ 저술: 「매스컴과 광고」 (편저), 「언론법제이론」 「북한의 언론」 (공저)

□ 현재 경희대 신문방송대학원장, 언론중재 위원회중재위원